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4.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5월 4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5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6. 20.) 상정 의결 보류
-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가. 제안이유

○ 장학재단의 목적사업 추가와 그에 따른 재단 명칭 변경에 따라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 승인사항을 반영하고,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 정수 확대와 임기 정비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미래교육재단으로의 재단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 목적사업 추가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
- 재단 확대에 따른 임원 정수 확대 및 당연직 이사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 임원의 임기 일원화에 따른 정비(안 제8조제6항)
- 사무국 명칭 변경(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재단 목적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목적 명확화를 위해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현재의 재단명칭인 "장학재단"을 "미래교육재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사업)는 미래교육재단이 시행하는 목적사업으로서 현 조례상 장학 재단이 시행하는 목적사업에 "지역인재양성"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며, 안 제8조(임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를 현행의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 이사에 구청장을 신설함. 또한, 타위원회 위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의 영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사장의 임기를 현행의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모든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 안 제9조(운영기관)는 현 조례에서 장학재단의 사무 처리를 위해 두고 있는 "사무국"을 "운영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함. 현재 영등포구 장학재단은 사무국장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미래교육재단은 대표이사체제로 운영될 예정임을 반영하여 사무처리기구 명칭을 변경한 것임.
- 부칙 제2조(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이사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22.10.1.~ '23.1.31.)결과를 토대로 주요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의 추가 및 이에 따른 재단 명칭 변경, 임원의 정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영등포구 장학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음.
- 변경 승인 받은 정관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민법」에 따라 적정하게 규정되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영등포구의 우수인재 발굴 및 지역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개정에 앞서 구의회 포함, 교육전문가 등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 후 진행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단설립에 따른 신규재원 투입 규모를 감안하여 재원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148 호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이사회 의결에 따른 재단의 목적사업 추가, 재단 명칭 변경 및 임원의 정수 확대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미래교육재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미래교육재단으로의 정관 변경에 따른 재단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 나. 목적사업 추가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5조제1항제6호, 제8조제4항)
- 다. 재단 확대에 따른 임원 정수 확대 및 신설(안 제8조제1항, 제3항)
- 라. 임원의 임기 일원화에 따른 정비(안 제8조제6항)
- 마. 사무국 명칭 및 일부 내용 변경(안 제9조)
- 바.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 정비 등 (안 제12조제2항,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 동의 라. 입법예고(2023. 3. 30. ~ 4. 19.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학재단"을 "미래교육재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학재단"을 "미래교육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그"를 "지역인재양성 및 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학사업"을 "장학사업 및 지역인재양성"으로,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1. 구청장

제9조의 제목 "(사무국)"을 "(운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국"을 각각 "운영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정관"을 "정관 및 운영규정"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등포구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이사장의 임기는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6항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	 제1조(목적)
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의 교육발전과 우수한 인재	
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	
별시 영등포구 <u>장학재단</u> 의 설립	미래교육재단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u>
1. "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영	1
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u>장학재단</u> (이하 "재단"이	<u>미래교육재단</u>
라 한다)에 출연하는 서울특	
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	
다)의 예산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고등교	2. "학교"란 「초·중등교육
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
고등학교를 말한다.	<u>한다.</u>

-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 제5조(사업) ① 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시행한다. ------
 - 1. ~ 5. (생략)
 - 6. <u>그</u>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 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생략)
-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u>15명</u> 이내의 이사 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의 정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신 설>

1. · 2. (생략)

- ④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u>장</u> <u>학사업</u>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 되, <u>구의회</u>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
- ⑤ (생략)
- ⑥ 이사장의 임기는 <u>3년</u>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⑧ (생 략)

제9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세0소(사업) ①
1. ~ 5. (현행과 같음)
6. <u>지역인재양성 및 그</u>
◎ (ᅯᅰᅱ 키.ㅇ)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임원) ①
20명
<u>=</u>
② (현행과 같음)
(3)
<u>1. 구청장</u>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④ <u>장학</u>
사업 및 지역인재양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u>(이하 "구의회"라 한다)</u>
· ② (취외기 기수)
⑤ (현행과 같음)
⑥ <u>2년</u>
· ⑦·⑧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기관) ①

처리하기 위하여 <u>사무국</u>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12조(보고) ① (생 략)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 월 이내에 <u>영등포구의회</u>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u>운영기관</u>
<u>.</u>
② 운영기관
<u>정관 및 운영규정</u>
②
<u>구</u> 의회
<u>.</u>
1. • 2.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